

(參 照)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運營委員會

1. 監査의 目的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規程에 의하여 議會事務局의 運營實態를 精確히 把握하고, 議會事務局行政業務의 不合理 要因을 改善하여 議會業務가 效率的으로 隨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自治立法 活動에 反影함과 同時に 심도있는 1993年度 豫算審議등을 위한 資料 및 情報의 獲得을 目的으로 한다.

2. 監査期間

- 1992. 11. 30 (月) [1日間]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麻浦區議會事務局

4. 監査 實施 經過

가.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區分	監査委員	對象機關	監査場所	事務補助
運營委員會	(委員長)李鍾萬 (幹事)權五範 (委員) 具又石, 金鍾烈 孫龍浩, 李康泌 李奉衡, 鄭然宇 曹熙太, 蔡雲錫	議會事務局	運營委員會 會議室	議案係-尹載明

나. 監査日程

月 日	監査對象機關(監査內容)	備考
'92.11.30(月)	○業務現況報告 聽取	
09:30~10:00	○質問, 答辯 ○監査結果評價 및 監査終了	

다. 監査方法

監査 對象機關에 대해 現況報告 聽取, 主要業務 推進內容에 대한 質問答辯을 통한 監査를 實施하였음.

5. 主要 監査 實施 内容

- '92年度 各種 主要業務의 計劃과 推進

實績

- '92年度 豫算의 執行事項
- 議政活動 支援에 관한 事項

6. 監査結果

- 가.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啓음
- 나. 建議事項: 啓음

7. 處理意見: 啓음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1. 監査의 目的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規程에 의하여 麻浦區政 運營實態를 精確히 하고 市民生活과 直結된 區行政業務의 不合理 要因을 指摘 改善하여 區民便益을 增進하고, 區行政이 效率的으로 隨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自治立法 活動에 反影함과 同時に 심도있는 1993年度 豫算審議등을 위한 資料 및 情報의 獲得을 目的으로 한다.

2. 監査期間

- 1992. 11. 30 (月)~12. 2 (火) [3日間]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麻浦區廳(文化公報室, 監査室, 市民奉仕室, 總務局, 財務局)
- 洞事務所(倉前洞, 桃花2洞)

4. 監査 實施 經過

가.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區分	監査委員	對象機關	監査場所	事務補助
總務財務委員會	(委員長)沈載和 (幹事)尹東鉉 (委員) 金星煥, 金裕顯 朴柱緒, 俞南烈 尹正鏞, 李康泌 曹熙太	文化公報室 監查室 市民奉仕室 總務局 財務局 洞事務所	總務財務委員會 會議室 및 洞事務所	議案係-尹載明

나. 監査日程

月 日	監査對象機關(監査內容)	備 考
'92.11.30(月) 10:00-18:30	<input type="radio"/> 總務局 業務現況報告 騰取 <input type="radio"/> 財務局 業務現況報告 騰取 <input type="radio"/> 文化公報室 <input type="radio"/> 監查室 <input type="radio"/> 市民奉仕室 <input type="radio"/> 總務局	
'92.12.1(火) 10:35-18:00	<input type="radio"/> 倉前洞事務所 <input type="radio"/> 桃花2洞事務所 <input type="radio"/> 總務局	
'92.12.2(水) 10:00-16:10	<input type="radio"/> 財務局 <input type="radio"/> 監査結果 講評 <input type="radio"/> 監査終了	

다. 監査方法

監査對象機關에 대해 業務現況報告
 聽取, 書類提出 要求, 主要業務 推進
 內容에 대한 質問 答辯을 통한 監査
 를 實施하였음.

5. 監査結果

가. 主要監査 實施內容

監査對象機關	主 要 監 査 內 容	備 考
文化公報室	<input type="radio"/> 홍보용 도서 및 구정홍보물 구입현황 <input type="radio"/> 구민위안 행사내역 <input type="radio"/> TV유선방송 지도 감독 현황 <input type="radio"/> 구정 홍보실적과 활성화 계획 <input type="radio"/> 지정된 문화재 관리현황 <input type="radio"/> 지역전통문화 발굴확산과 현대문화 활성화계획 <input type="radio"/> 보상금 사용내역('92년도 10월말 현재) <input type="radio"/> 특별판공비 사용내역('92년도 10월말 현재)	
監 査 室	<input type="radio"/> 각종 감사 수감내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input type="radio"/> 비위관련 공무원 진정 조사내용 및 조치결과 <input type="radio"/> '92감사추진실적과 조치내역, 문제점과 개선책 <input type="radio"/> 민원, 건의, 진정, 탄원 등 접수처리 현황	
市民奉仕室	<input type="radio"/> 민원서류 신청하고 찾아가지 않은 건수와 대책 <input type="radio"/> 민원 불편해소 추진사항 및 대책	
總務局	<input type="radio"/> 동사무소 소규모공사 현황(창틀교체, 사무실구조변경, 장애자 편의시설, 청사도색, 게시판보수) <input type="radio"/> 총무국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input type="radio"/> 모범동민 시상현황 <input type="radio"/> 동행정지도 특별판공비중 주요 업무추진 현황 <input type="radio"/> 동 친목행사비 지원, 동행정 업무지원 현황 <input type="radio"/> 동별 체육대회 실시현황(현금, 후원금, 찬조금모금 및 사용현황 및 운영내역) <input type="radio"/> 동장의 임, 면 및 상별 현황	

監査對象機關	主 要 監 査 內 容	備 考
總務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 위, 해촉 현황('91.6월부터 현재까지) ○ 동청사 환경관리의 추진실적 ○ '92기동파견자 명단 및 내용 ○ '92통반장 교육 및 연수내역과 계획 ○ '92년도 전직원 인사발령 내역 ○ 각과별 사용차량현황 및 용도 ○ 각동별 보상금증 반장 격려 사용 내역 ○ 동사무소 월동대책 ○ '92년 편공비 예산 및 집행명세 	
企劃豫算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지, 자치행정지, 자료실 도서구입 현황 ○ 소송수행자, 표창대상자 심사 및 내신현황 ○ '92년 현재 소송 계류중인 업무 ○ '92예산대 집행 비율 및 분기별 심사분석 내용 	
國民運動支援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운동지원 사업추진비 지출내역 ○ 환경정비 참여자 격려내역 ○ 사회단체 보조 1억원의 지출(사용)내역 ○ 새마을지도자 육성현황 ○ 새마을특별지원사업 계획과 현황 및 단위금고 지원 현황 ○ 새마을금고 추진실적보고 현황 및 단위금고 지도현황 ○ 바르게살기운동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현황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활동현황 ○ 도시새마을 환경정비 계획수립 및 사업정산현황 ○ 도시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 새질서새생활 추진실적 과 향후 개선책 ○ 국민운동지원비증 월별 행사내역과 지원사항 	
生活體育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관련시설 설치현황 ○ 체력단련장업, 미용체조장업, 당구장업, 종합시설업, 행정처분, 이용료 신고내용 ○ 무허가 체육시설업소 단속 및 고발현황 ○ 여가생활 진흥대책 수립 및 개발현황 ○ 체육시설 및 레저교실 운영현황 ○ 여가생활 관련단체 육성지원 현황 ○ 체육관계 비영리법인 임원 취(해)임 승인 및 임원취임의 취소현황 ○ 공원 및 일반체육시설 도색업자 신청기준 및 명단과 '92 도색관리 비용과 현황 	
民防衛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수당 지급현황 ○ 민방위 교육훈련 결과 현황(우수대 및 유공자 표창, 불참자 처벌현황) ○ 병력동원계획 수립현황 ○ 민방공훈련 실적과 각동의 민방위 동원 설치 ○ 민방위훈련 교육실태 	

監査對象機關	主 要 監 査 內 容	備 考
財務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9급 대우공무원 수당지급 내역 ○ 정수물품 변경승인 내용 ○ 국·공유 잡종재산의 임대계약 현황 ○ 예정금액 3,000만원이상 공사 내용 ○ 예정금액 1,000만원이상의 계약 현황 ○ 단가계약품목의 매각처분 내용 ○ '92 국유재산 매각처분 내용 ○ 구유재산중 잡종재산의 지적측량 실적 건수와 미측량 건수, 완료기시, 효율적 관리방안 ○ 수의계약공사내역(건명, 이유, 금액, 사업체현황) ○ '92년 관공비 예산 및 집행명세 ○ '92년 각종 사업 계약명세(1,000만원이상) 	
稅務 1,2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에 대한 세제의 세원조사 현황 ○ 법인에 대한 제신고처리 및 감액처리 현황 ○ 법인의 과세면제 및 감면처리 현황 ○ 법인의 조세범죄사건의 조사처리 현황 ○ 법인실사 집행현황(자본금 10억원이하 법인) ○ 미준공된 건물 종목별 세금부과 현황 ○ 제세 자진신고 납무처리 현황 ○ 과세면제 및 감면신청 처리현황 ○ '92 재산세징수 체납 현황 및 고액 체납자 ○ 재산세 납부실적과 세외수입 현황 ○ 체납자 전산처리 실적과 고액체납자 관리 및 징수방안, 압류건수, 처리건수 ○ 고액체납자 (5백만원이상 1백명까지) 현황 	
土地管理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거래 규제에 해당되는 대상물중 거래계약 신고 및 허가현황 ○ 부동산 중개현황 민원 및 행정처분 내역 ○ 토지지가 전산화 계획,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교육과 관리현황 	
洞事務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공사 현황 ○ 동정 여건 현황 ○ 주민숙원사업 현황 ○ 동청사 환경정비 현황 	

나.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 (1) 각종 위원회(건축심의위원회, 계약 심사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운영이 형식에 치우치고 또한 운영실적이 미흡하니,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 (2) 시정홍보지와 구정홍보지의 구독

대상자 선정과 홍보지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3) 구정홍보물(반상회보 포함)의 활용이 미흡하니,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 (4) 마포구의 상징물을 선정한 후 상

- 장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상징물의 활용이 미미하니 적극적인 홍보방안과 활용대책을 강구할 것.
- (5) 양화진나루터 기념비의 위치가 부적정하니, 정확한 위치로 이전할 것.
- (6) 동사무소의 소규모공사(창률교체, 사무실구조변경, 계시판보수 등)는 예산을 주어진 항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시정바람.
- (7) 각동의 TV유선방송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저조하니, 특히 시설비 등의 철저한 지도단속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할 것.
- (8) 정수물품의 변동이 많고, 물품구입의 일관성이 부족하니 시정할 것.
- (9) 각종 세금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구대책이 미흡한바 철저한 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 (10) 부동산 중개업자 과징금징수 실적이 미흡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 (11) 수용비 및 수수료의 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함.(재정홍보책자 제작, 전산교육 등)
- (12)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가구당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이 적정하지 않음.
- (13)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재정지원은 상호 균형있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14) 하절기 장마시 방역소독지원금은 예산을 주어진 항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시정바람.
- (15) 동별체육대회시 주민 및 지도충인 사람들에게서 찬조금 및 기부금을 거슬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것.
- (16)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금이 부족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 (17)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법인장부 확인등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8) 여가생활전통계획 내용이 미흡하고 또한 추진실적이 부족하니,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19) 전화민원 발급 소요시간이 현재 3시간이 소요되는데, 전산화시대에 즈음하여 또한 대민봉사 차원에서 1시간이내로 단축 발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0) 동사무소 현장 확인 결과 사무실이 추워 동직원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각동 사무소의 월동대책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할 것.
- (21) 국, 공유지 점용료(사용료, 대부료) 정수실적이 미진한 바, 철저한 정수계획을 수립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할 것.
- (22) 국,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는 실태조사가 중요한데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다. 建議事項

- (1) 씨름왕 선발대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말고 구민체육대회등에서 함께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2) 각종 포상은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등에게 편중되어 있으니 다른 단체의 회원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
- (3)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미흡하니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여자민방위통대장 임명시 민방위대지원서 등 서류를 구비할 것.

6. 處理意見

本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內容中是正 및處理要求事項은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9條의 規程에 의하여 麻浦區가

是正 또는 처리하고 그結果를 議會에
보고할 것을 要求하며, 建議事項은 今後
의 政策立案, 樹立, 施行過程에 積極 反
影할 것을 建議함.

7. 其他特記事項

大統領選舉등의 業務로 바쁜 現實을勘
案하여, 24개 洞事務所중에서 2개 洞事務所
(倉前洞, 桃花2洞)를 選定, '92.12.1일
洞事務所에 出張 監查를 進行하였음.

8. 參考事項

○ 行政事務監查 書類提出 要求現況

區分	室 課 別 件 數	備 考
總 計	95件	
各 室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化公報室 (10) ○ 監查室 (4) ○ 市民奉仕室 (2) 	
總務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總務課 (20) ○ 企劃豫算課 (4) ○ 國民運動支援課 (10) ○ 生活體育課 (11) ○ 民防衛課 (5) 	
財務局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財務課 (12) ○ 稅務 1,2 課 (12) ○ 土地管理課 (3) 	
其 他 (2)	○ 社會福祉課 (2)	

1992年度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書

市民保健委員會

1. 監查의 目的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
16條의 規程에 의하여 麻浦區政 運營實
態를 精確히 把握하고, 市民生活과 直結
된 區行政業務의 不合理要因을 指摘 改善
하여 區民便益을 增進하고 區行政이 效率
의으로 隨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며,
自治立法 活動에 反影함과 同時に 심도있
는 1993年度 豫算審議등을 위한 資料
및 情報의 獲得을 目的으로 한다.

2. 監查期間

○ 1992.11.30~12.2 (水) [3日間]

3. 監查實施 對象機關

- 麻浦區廳(市民局, 保健所)
- 洞事務所(上岩洞, 新水洞)

4. 監查 實施 經過

가. 監查委員會 編成 및 監查場所

區 分	監查委員	對象機關	監查場所	事務補助
市民保健 委員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委員長)具又石 (幹事)洪性煥 (委員) 金相烈, 宋潤錫 李奉衡, 李宗一 鄭然宇, 洪吉均 黃泰植 	市民局 保健所	市民保健 委員會室 及 洞事務所	議案係- 李京用

나. 監查日程

月 日	監查對象機關(監查內容)	備 考
'92.11.30(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民局 業務現況報 告 聽取 ○ 保健所 業務現況報 告 聽取 ○ 社會福祉課, 家庭福 祉課, 環境課 	
'92.12.1(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產業課, 衛生課 ○ 保健所 	
'92.12.2(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清掃課 ○ 上岩洞事務所 ○ 新水洞事務所 ○ 監查結果 講評 ○ 監查終了 	

다. 監查方法

監查對象機關에 대해 業務現況報告
聽取, 書類提出 要求, 主要業務 推進
內容에 대한 質問 答辯을 통한 監查
를 實施하였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5. 主要監査 實施內容

監査對象機關	主要監査內容	備 考
社會福祉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된 직업안내소(법인체 주식회사) 또는 무료직업안내소 단속건수와 감사실적 ○ 저소득층 생호할보호대상자 지원금 현황 ○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현황 ○ 저소득 지원사업 현황 ○ 노점상 생업자금 대출 및 회수현황 ○ 맹인도서관 운영현황 ○ 취로사업 세부추진현황 ○ 의료보호음자 및 회수현황 ○ 부랑인 단속실적 현황 및 단속공무원 인적사항 	
家庭福祉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장의업체 현황 및 예식장 민원발생 내용 ○ 알뜰시장 추진현황과 거래품명 ○ 노인 무료진단 횟수 및 동별현황 ○ 청소년 지도육성사업 추진현황 ○ 어버이날 행사 지출명세 및 사업실적 평가서 ○ 청소년 문화행사 집행내역 ○ 경로식당 운영업무 실태현황 ○ 노인정 신축공사 추진현황(3개 노인정) 	
衛生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식품위생업소 단속내역 및 결과조치 내용 ○ 유통식품 수거 보상품명 현황 ○ 공중위생업소 숙박, 이·미용, 유기장, 목욕탕 허가 단속현황 ○ 퇴폐, 변태, 무허가, 시간외 영업위반 단속현황 ○ 식품위생업소 협정요금 지도단속 현황 ○ '92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적발현황 및 조치내용 	
產業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시설 음자금 지출내역 ○ 광견병 예방접종 및 쥐잡기사업 추진현황 ○ 공산품 채취 추진현황 ○ 관내 연료취급소 현황 및 단속실적 현황 ○ '91-'92 주유소 허가신청 현황 ○ 비축연탄 업무추진 현황 	
環境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 ○ 환경 홍보교육 추진실적 현황 ○ 환경유해업소 허가실태 및 적발 조치현황 	
清掃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선비품 구매명세 및 업체 인적사항 ○ 공변신축공사 내역 및 추진현황 ○ 공상보상 산출내역 지출현황 ○ 수하차 대폐차 구매현황, 구입업체 인적사항 ○ 짐하장 신축 지출명세 및 업체명 ○ 공공요금 세부명세 및 집행현황 	

監査對象機關	主 要 監 査 內 容	備 考
保 健 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각종 예방접종에 관련한 약품구매계약서 및 예방접종 추진실적 ○ 연막소독실시 주민확인 현황 ○ 방역기동반 구성원과 방역회수 실적현황 ○ 관내 공동우물 현황 및 대책 ○ 관내 취약지역 특별진단결과 유무현황 ○ 미혼녀 임산부 이용실적과 조치현황 ○ 환자진료현황 및 의약품 지급실태 현황 ○ 하절기 소독실적 현황 및 소독제 구입현황 	

6. 監査結果 處理現況

1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가. 시민국

(1) 시민국 총괄

- 제출된 일부 서류중 요구내용이 미비한 점이 있었으므로 향후 자료제출시에는 성의있게 제출할 것.

(2) 사회복지과 소관

- 저소득층 생업자금 응자시 보증인 확보의 어려움으로 응자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생업자금융자 관리대장에 연체이자를 별도 관리하여야 함에도 연체이자란이 없이 이자란에다 동일하게 관리하므로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정 조치할 것.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등 각종 위원회의 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였고 회의록 작성, 관리등을 소홀히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할 것.
- 부랑인단속 업무추진이 매우 저조하였는데 부랑인 발생 억제 대책과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3) 가정복지과 소관

- 각종 위원회에 한사람이 여러가지 위원직책을 맡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 알뜰시장의 운영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등을 바꾸거나 사고 파는곳이 아니라 대부분 새제품을 팔고 사는 등 기본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 취지에 맞는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

(4) 위생과 소관

-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구민의 식품위생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을 한꺼번에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업무와 불법업소 단속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5) 산업과 소관

- 금년 예산에 반영된 현수막 제작비와 비축연탄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의 시정과 이에따른 향후대책을 수립할 것.
- 가스판매업소 관리감독 소홀로 가스통을 보도에 방치하여 통행의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

(6) 환경과 소관

- 공해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이 저조하였는 바 적극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7) 청소과 소관

-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미흡으로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저조하고, 각동에 위촉된 추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나. 보건소

- 방역소독시 주민확인이 형식적이고 확인자가 일률적으로 기록하였는바, 이를 시정하고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2. 建議事項

- 보건사회부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현실적인 소득등의 여건과 매우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극빈자 보호를 하는데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해당부서에 건의하고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보건소 일부 기술직 공무원이 직제가 없어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바, 직급별 기술직 정원을 확대, 사기를 진작시켜 직무수행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전문직의사를 확보하여 구민보건의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3. 處理意見

本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內容중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은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9條의 規程에 의하여 麻浦區廳
長이 是正 또는 處理하고 그結果를
議會에 報告할 것을 要求하며, 建議事項
은 今後의 政策立案, 樹立, 施行過程에
積極 反影할 것을 建議함.

7. 其他 特記 事項

大統領選舉의 法定業務로 바쁜 現實을
勘案하여 24개 洞事務所 중에서 2개 洞
(上岩洞, 新水洞)을 選定, '92.12.2일 洞
事務所에 出場 監査를 進行하였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1. 監査의 目的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第19條의 規程에 의하여 麻浦區政運營實態를 把握하고 市民生活과 直結된 区行政業務의 不合理要因을 指摘 改善하여 區民便益을 增進하고 區行政이 效率的으로 隨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自治立法活動에 활용하고 1993年度豫算審議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資料 및 情報의 獲得을 目的으로 한다.

2. 監査 方法

1992.11.30(月)~1992.12.2(水) [3日間]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麻浦區廳(都市整備局, 建設局)
- 洞事務所

4. 監査實施 經過

가. 監査班의 編成

區分	監査委員	對象機關	監査場所	事務職員
都市建設委員會	委員長 韓賢惠 幹事 田炳萬 委員 權五範, 金東暉 金汝泰, 金鍾烈 孫龍浩, 尹明奎 李仁求, 李鐘萬 李天揆, 蔡雲錦	都市整備局 建設局	都市建設委員會室	신승관

나. 監査日程 및 場所

日字	監査對象部署	監査場所	監査方法	備考
'92.11.30(月)	건축과 주택과	도시건설 위원회실	현황보고청취 자료요구 정책질의	
'92.12.1(火)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설관리과	도시건설 위원회실	"	
'92.12.2(水)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도시건설 위원회실	"	

다. 현장답사

연남동의 1개소의 현장을 답사할 것을 의결('92.11.30)하고 다음과 같이 현장을 답사하였음.

日 時	현장답사반	확인대상	備 考
'92.12.1 10:00- 16:00	이인구 위원 이천규 위원 김동휘 위원 손용호 위원	연남동, 용강동	연남동과 용강동 방문 무허가건물 현황 청취

5. 主要監査實施內容

가. 소관별 실시내용

(1) 도시정비국 소관(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事 項 別	主 要 監 査 實 施 內 容
住 宅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건물 발생방지 및 처리대책 ○ 마포구지역에 대한 재개발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 ○ 주택민원 처리 적정성 여부
都市整備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형질변경 허가현황 및 무단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현황과 향후 대책 ○ 마포구 도시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 ○ 간판 허가요건 및 무허가 간판 단속 대책 ○ 성산동 정비단지 종합계획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
地 域 交 通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향상 대책 ○ 이면소방도로 주차문제점 및 해소 방안 ○ 관내 개인택시 및 영업용 택시의 차고지증명 발급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 ○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현황 및 자격심사의 적정성 여부 ○ 지역교통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대책 ○ 법규위반 차량 현황과 행정처분 결과 및 향후 대책 ○ 주차공간 확보방안 ○ 824번 시내버스의 버스요금 적정성 여부 ○ 마포주차장의 관리 및 주변 이면도로 주차관리의 문제점 및 관리 대책 ○ 연남동 기사식당앞 불법주차 단속방안 ○ 동남교통 종점관리 지도감독 대책 ○ 연남동 마을버스 노선의 적정여부 및 조정계획 여부
建 築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민원 처리의 적정성 여부 ○ 공덕동 111-64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처리 적정성 여부 ○ 위법건축물 발생방지 및 처리내용 ○ 민원체소 및 법규정위반으로 미준공된 건물중 요건을 구비하여 준공필한 건축물 현황과 향후대책 ○ 중형이상 건축물에 대한 미준공 현황과 향후 대책 ○ 위법건축사 및 감리사 행정조치 현황과 향후 대책 ○ 건축행정의 질서화립 대책
地籍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향상 대책 ○ 민원시간 단축방안 ○ 지적공사 민원직원의 불친절 해소방안 및 감독대책

(2) 건설국 소관(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事項別	主 要 監 査 實 施 內 容
建設管理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암동 25m간선도로의 토지보상 현황과 미보상 토지에 대한 향후 대책 ○ 공공용지 점용자들에 대한 공공용지의 불하대책 ○ 각종 공사계약의 적정성 여부 ○ 도로점용 실태와 점용료 부과현황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향후 대책 ○ 각동별 노상적치물 단속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 포장마차 단속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포장마차 업주에 대한 생업자금 지원대책과 향후 관리 대책
土木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등 관리현황과 향후 개선대책 ○ 보안등수리 계약회사와의 계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 ○ 도로굴착후 복구가 지연되는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 ○ 각종 도로공사시 부실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 ○ 각종 토목공사 계약의 적정성 여부 ○ 각종 토목공사의 공기단축 방안 ○ 각종 토목공사의 마무리를 겨울철에 하지 않을수 있는 방안
下水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원1펌프장 창호교체공사 계약의 적정성 여부 ○ 도로공사시 하수도시설과 병행하여 공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公園綠地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공원녹지과 공사 계약의 적정성 여부 ○ 와우산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 및 대책 ○ 이면도로 가로수 전지의 문제점 및 대책 ○ 삼지마당 조성 및 관리 대책

6. 監査結果 處理意見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시정비국 소관(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가) 도시정비국 총괄

○ 구의회 감사자료 제출시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향후 구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하고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주택과 소관

○ 연남동 및 용강동을 방문, 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결과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할 것

○ 각종 공부정리가 미흡한 바,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공부정리에 만전을 기할 것

다) 도시정비과 소관

○ 불법광고물 사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

○ 소형스티커에 의한 환경공해가 심각한 바,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지역교통과 소관

○ 민원부서로 친절행정이 미흡한 바, 친절도를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

마) 건축과 소관

○ 사용검사후 불법건축물에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대책을 수립하

<p>여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행정의 절서화립과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위한 건축사 지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 각종 민원(허가, 사용검사 등)이 지체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할 것 <p>바) 지적과 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부서로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가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할 것. ○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적공사 직원들의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가 매우 미흡한 바, 이에 대한 감독대책을 수립하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 지적공사에 지적측량 의뢰시 처리기간이 지연되는바, 이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2) 건설국 소관(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p> <p>가) 건설국 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이 미흡한 바,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할 것. <p>나) 건설관리과 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마차 업주에게 지원한 생업자금 응자금 회수대책을 수립하여 생업자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 ○ 아직도 일부 포장마차가 밤늦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단속방안을 마련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 ○ 공공용지 용도폐지후 불하가 지연되는바 조속 불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 도로개설 공사구간(상암동 진입로) 토지보상 미협의자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할 것. ○ 공공용지 무단점용자 발굴계획을 	<p>수립하여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건축공사장의 건축을 위한 일시 도로점용을 하는데 있어 과다점용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p>다) 토목과 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등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보안등수리에 만전을 기할 것. ○ 도로굴착후 복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바, 향후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 각종 토목공사시 부실공사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 각종 토목공사의 공기지연으로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바, 공기단축 방안을 수립할 것. ○ 각종 토목공사의 마무리를 동절기에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 각종 토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할 동사무소 직원들도 숙지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p>라) 공원녹지과 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면도로 가로수 전지가 미흡한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기로수전지에 만전을 기할 것. <p>나. 건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고지증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상급기관에 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2) 기사식당앞 불법주차 문제가 새로운 공해요소로 대두되는바, 향후 단속에 따른 업주처벌 방안을 편계기관에 건의하는등 대책을 강구바람. (3) 도로굴착비를 이중으로 납부(도시가스회사, 구청)하는 것은 주민들의 번거로움이 있으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	---

(4) 가로수 수종으로 부적합한 것이 도처에 발견되고 있는바, 향후 계획수립시 부적절한 가로수는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다. 처리의견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93.1.20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 수립,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증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2. 12. 2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 12. 9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2. 12. 10
- 다. 상정일자 : 제13회 정기회
제 7 차 위원회 ('92.12.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석봉)

가. 제출이유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의료직공무원의 수당지급 기준이 타시도와 비교, 현저히 낮음으로 수당지급 체계를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고용직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 년수에 따라 가산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1) 제2조의 제목중 “의료업무수당”을 “의료업무등의 수당”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

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별표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2) 제3조(방범수당) : 신설

- ①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하고,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 년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월 8,000원~월 100,000원)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현기)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각 구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준칙을 시달하여 그 내용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의료직공무원인 의사와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들의 수당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운동현위원) : 방범대원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 답변(총무과장 김석봉) : 신규채용은 현재 안하고 있음.
- 질의(유남렬위원) : 별표2의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 중 “가급”과 “나급”의 내용은?
- 답변(총무과장 김석봉) : “가급”은 “전문의”, “나급”은 “일반의”가 해당 되는 것임.

5. 토론요지 : 방범대원등의 처우개선등 적절한 개정조치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